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안내

■ 청약 일정

구분	신청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024.11.18.(월)	청약Home 인터넷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에서 신청(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사업주체 견본주택 10:00 ~ 14:00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허용 * 접수시 모든 구비서류 제출(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주택형별 대상 세대

구분	59A	59B	74	84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파주시 및 경기도(50%)	15	10	11	3	39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50%)	14	10	11	2	37

■ 신청대상자 및 유의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해당 시·도(파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 수도권(서울·인천 거주자) 50%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시 해당주택건설지역(파주시) 거주자 우선 선정함]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시 및 인천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에게 우선공급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단, 부부 중복 청약 시 선당첨은 인정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	40	4명 이상	4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15	3명 이상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 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5	10년 이상	15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미성년자)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청약홈 청약제도 안내, 관계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